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2816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safety11@korea.kr

○ 전화 : 043-830-4322

○ FAX : 043-830-4299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0-86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5.1.1. 추가지정 이전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14.12.31. 이전 착공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방안을 마련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기준	개정 취지	개정(안)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15.1.1. 이후 추가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물질추가지정 이전부터 취급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	‘14.12.31. 이전 시설과 동일수준으로 배관 비파괴·내압, 방류벽 등 안전관리방안 19개 항목 적용
기존시설 판단기준	시설의 교체·변경, 취급하는 물질 변경에 따라 기준 적용방안 마련	1) 부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시설과 동등 이하 규격·용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2) 취급물질 변경 시 시설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나. 용어정비

기준	개정 취지	개정(안)
주입호스	주입호스 기준을 안전원고시 제2017-10호에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로 이동	‘주입호스’를 용어정의 부분으로 이동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2816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safety11@korea.kr

○ 전화 : 043-830-4322

○ FAX : 043-830-4299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0-87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5.1.1. 추가지정 이전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14.12.31. 이전 착공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취급시설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기준	개정 취지	개정(안)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15.1.1. 이후 추가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물질추가지정 이전부터 취급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	'14.12.31. 이전 시설과 동일수준으로 배관 비파괴·내압, 방류벽 등 안전관리방안 19개 항목 적용
기존시설 판단기준	시설의 교체·변경, 취급하는 물질 변경에 따라 기준 적용방안 마련	1) 부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시설과 동등 이하 규격·용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2) 취급물질 변경 시 시설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배관설비	기존시설의 배관 성능 증빙 불가능한 상황 해소	배관의 재료·구조·강도 및 두께 기준에도 아래의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적용 1)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2)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등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3) 위험도기반검사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 합격한 경우